



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등 2건의 법률안 검 토 보 고

-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이언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648호)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진욱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4307호)

2024.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 검토의견	8
1. 총괄 검토	8
가. 제정안의 주요 내용	8
나.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11
2. 주요 조문별 검토	15
가. 법률의 제명 및 목적	15
나. 정의·국가 등의 책무·다른 법률과의 관계	16
다. 기본계획·실행(시행)계획의 수립 및 통계 작성	19
라.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설치	24
마. 지원정책, 인허가 및 예타 등 특례	28
바. 반도체클러스터·반도체산업혁신특구	45
사. 반도체기술보호 종합대책의 수립	59
아. 반도체산업특별회계 설치·운영	61
자. 전문인력양성 지원 등	63
차. 부칙	66
※ 참고자료	68

I. 제안경위

【이언주의원 대표발의안】

1. 제 안 자 : 이언주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8. 8.
3. 회 부 일 : 2024. 8. 9.

【정진욱의원 대표발의안】

1. 제 안 자 : 정진욱의원 등 24인
2. 제 안 일 : 2024. 9. 25.
3. 회 부 일 : 2024. 9.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언주의원 대표발의안】

제안이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4개 분야에서 국가·경제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산업을 지정하도록 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본계획의 수립, 기술 보호조치, 특화단지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국, 중국 등이 자국 반도체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촉진하는 등 글로벌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만으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아울러, 현행법상 반도체 기술에 대한 보호조치는 규제적 성격이 강해 국내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대통령 소속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반도체산업특별회계 설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 산업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 및 지원함으로써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고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이 국가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반도체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다.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전년도 실행계획 이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실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6조).

마.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과 관련된 정부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반도체 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함(안 제7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반도체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

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인프라 조성 등을 위하여 지원하여야 함(안 제9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력 및 용수 공급 산업기반시설 등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안 제12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이 반도체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대하여 자금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음(안 제13조 및 제14조).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하고, 반도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반도체산업 공급망센터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차. 정부는 반도체 기술혁신 및 지속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함(안 제19조).

【정진욱의원 대표발의안】

제안이유

글로벌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

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규제 중심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제는 국내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장애가 될 수 있으며, 반도체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및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기반시설 구축, 전문인력 지원, 기술보호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함. 또한, 반도체산업혁신특구를 지정하여 혁신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국내외 투자를 촉진하고 기술 개발 및 설계·제조·공급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함. 반도체산업혁신특구는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중 일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등 다양한 지역에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였음.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통해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고, 국가 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재원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정부는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라. 반도체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과 관련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반도체경쟁력강화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마. 반도체산업 생태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연구개발, 기반시설 구축, 전문인력 지원, 기술보호 등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 연구개발특구로 조성된 지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반도체산업혁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반도체산업혁신특구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기회발전특구·연구개발특구와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반도체산업혁신특구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인·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인·허가권자는 이를 신속히 처리하

도록 함(안 제13조).

아. 반도체산업혁신특구 관리주체와 관련 기업, 연구기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령 정비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속히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하도록 함(안 제14조).

자. 반도체산업의 혁신 발전과 투자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산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련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차. 반도체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반도체기술 관련 대학의 설립, 반도체산업혁신특구로 이전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8조).

Ⅲ.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가. 제정안의 주요 내용

2건의 제정안(이언주의원안, 정진욱의원안)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 국가반도체경쟁력 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클러스터(반도체산업혁신특구) 조성, 반도체산업특별회계 설치, 연구개발·기반시설 지원, 인재육성 등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을 통해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고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의 특별법안임.

이언주의원안과 정진욱의원안은 각각 본문 20개 조항과 부칙 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章)으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음.

아래 [표 1]은 두 제정안을 이해의 편의를 위해 총론, 기본계획·시행계획·통계작성, 위원회 설치, 조정, 지원 정책, 인·허가 및 예타 등 특례, 반도체클러스터(반도체산업혁신특구), 반도체기술보호, 특별회계, 인력양성, 부칙 등으로 구분한 것임.

[표 1] 제정안의 구성

구분	이언주의원안	정진욱의원안
총론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본계획 시행계획 통계작성 등	제5조(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실행계획의 수립)	제5조(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반도체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위원회 설치	제7조(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제8조(국가반도체경쟁력강화위원회)
지원정책, 인허가 및 에타 등 특례	제8조(반도체산업을 위한 국가 전력망 설 치 및 확충) 제13조(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제14조(융자) 제15조(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 제16조(반도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제17조(반도체 산업 공급망센터의 지정 등)	제9조(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제13조(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제14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제15조(에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제20조(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 지원)
반도체 클러스터 (반도체산업 혁신특구) 지정 등	제9조(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등) 제10조(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등) 제11조(반도체클러스터 육성시책) 제12조(반도체클러스터의 산업기반시설 설치)	제10조(반도체산업혁신특구 지정 등) 제11조(반도체산업혁신특구의 변경 및 해제) 제12조(반도체산업혁신특구에 대한 지원)
반도체 기술보호	제18조(반도체기술보호 종합대책의 수립)	제16조(반도체기술보호 종합대책의 수립)
특별회계	제19조(반도체산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제17조(반도체산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인력양성	제20조(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18조(반도체 산업 전문인력양성 지원 등) 제19조(반도체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반도체클러스터의 산업기반시설 지 원에 관한 적용례)	제1조(시행일) 제2조(유효기간)

2건의 제정안은 공통적으로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매년 실행계획(시행계획) 수립, 반도체클러스터(반도체산업혁신특구) 지정, 전력 및 용수 등 인프라의 국가 또는 지자체 직접 설치, 사업자가 기반시설 구축 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생산시설 등에 대한 세제혜택 및 보조금 지원, 반도체기술보호 종합대책의 수립, 반도체산업특별회계의 설치, 전문인력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주요 차이점으로는 ① 이언주의원안의 경우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을 전력산업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 시책으로 이언주 의원안은 세제지원, 융자,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정진욱의원안은 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인·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 규제개선 신청,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 지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이언주의원안은 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하여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중복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반면, 정진욱의원안은 전략산업특화단지와 기회발전특구, 연구개발특구와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 등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이하 개별 조문 검토에서 상세히 다를 예정임.

나.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2건의 제정안은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추진체계와 각종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법 제정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먼저,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임. 우리나라의 반도체산업은 11년 연속 수출 1위, 국내 수출의 16%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해왔음. 그러나, 메모리반도체 외에 팹리스¹⁾, 시스템반도체²⁾, 파운드리³⁾ 등의 분야에서는 여전히 국제 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으로서, 이들 분야에 대한 기술적·산업적 역량과 시장점유율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⁴⁾.

또한, 인공지능, 미래자동차, 로봇 등 미래 산업과 관련하여 반도체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반도체를 무기화하여 국가간 안보와 연계된 자원으로 활용하기도 함에 따라 국제무대에서 반도체산업에 대한 주도권이 갈수록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 이로 인해 미국, 일본, 대만, EU, 중국, 인도 등 세계 각국은 반도체산업과 관련한 투자와 지원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하고⁵⁾ 전방위적 전략을 시

1) 팹리스(fabless)는 제조 설비(fabrication facility)가 없다(less)는 뜻으로서,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설계 및 기술 개발만 하는 산업분야를 의미함.

2) 다양한 기능을 집약한 시스템을 하나의 칩으로 만든 반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반도체와 대비됨.

3) 파운드리(foundry)는 반도체의 제조를 위탁받아 생산을 전문하는 산업분야를 의미함.

4) [참고자료 1] 반도체 산업규모 및 우리나라 시장점유율 참조

5) [참고자료 2] 주요국의 반도체 산업지원 현황 참조

행하고 있는 중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산업에서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비메모리 분야의 산업 역량을 확대하는 등 반도체산업에서 우월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중·소 기업 및 정부가 협력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전력·용수 등 산업인프라 공급, 인재육성, 보조금 지급 등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제정안은 이러한 취지에서 반도체산업 지원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적 근거를 반영한 것으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 기존의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법체계와의 차별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법(제정 '22. 2. 3., 시행 '22. 8. 4.)은 '22년 미국과 중국의 첨단산업 패권경쟁 속에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고,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 관점에서 첨단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현재 국가첨단전략산업(이하 ‘전략산업’)으로 지정된 4개 산업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분야로서, 제정 당시 동법은 “반도체 특별법”으로 불릴 만큼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이 주된 제정 목적이었고, 용인·평택 지역에 세계 최대·최고 “반도체 클러스터”(전략산업 특화단지) 등을 조성·지원하는 근거가 되는 특별조치법임.

동 법은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컨트롤타워로서 국무총리 소속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설치,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 기본계획(5년 단위) 및 실행계획(매년) 수립, 현황조사 및 관련 통계의 작성,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조성·운영 지원, 신속 인허가 패스트 트랙,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인재양성, 국제협력 등 제정안에서 반영하려 하는 사항들을 이미 다수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제정안은 지원 대상을 반도체산업에 집중하고, 정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대통령 소속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등을 설치하며,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등과 중첩하여 반도체클러스터(반도체산업혁신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의 의무지원 및 생산시설 구축 등을 위한 직접 보조금 지원, “반도체산업특별회계”의 설치 등을 추가적으로 규정한 것이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차별화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동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검토함에 있어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의 공통점 및 차별점 등을 검토하여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함과 동시에 법률 체계 및 행정 효율성 등의 관점에서 입법정책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제정안이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상의 중복 등을 최소화함으로써 법률간에 명확한 기능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주요 조문별 검토

가. 법률의 제명 및 목적(안 제명 및 제1조)

이언주의원안	정진욱의원안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 및 지원함으로써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고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을 통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여 국가 및 경제 안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의 제명은 알기 쉽고 간결하여야 하며, 법률의 주요 규정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두 제정안은 공통적으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내용임을 명시하고 있고, 다만 하나는 ‘특별조치법’인 반면 하나는 ‘특별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동 제정안은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산업발전법」,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를 양성·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산업계의 수요에 맞게 우수인재를 지속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및 기술역량 강화

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대한 각종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법’ 또는 ‘특별조치법’의 제명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제정안 제1조(목적)은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 반도체 주권, 국가 및 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등의 내용을 골고루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법률의 제명 및 법안의 전반적인 내용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나. 정의·국가 등의 책무·다른법률과의 관계 (안 제2~4조)

이언주의원안	정진욱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도체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메모리반도체, 비메모리반도체(시스템반도체, 광개별소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설계·제조·공급 등 사업화하는 산업 나. 가목의 산업에 필요한 설계·지적재산권·소프트웨어·소재·부품·장비·패키징 등 공급망 생태계에 해당하는 제품 및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도체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메모리반도체, 비메모리반도체(시스템반도체, 광개별소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설계·제조·공급하거나 사업화하는 산업 나. 가목의 산업에 필요한 설계·지적재산권·소프트웨어·소재·부품·장비·패키징 등 공급망 생태계에 해당하는 제품 및

이언주의원안	정진욱의원안
서비스를 사업화하는 산업 다. 가목 및 나목의 산업에 필요한 연구·개발 등을 하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 2. “반도체클러스터”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 반도체의 기술개발 및 설계·제조·공급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3. “반도체산업 공급망안정품목”(이하 “공급망안정품목”이라 한다)이란 반도체 중 해외 특정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으로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품목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이 국가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반도체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규제 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반도체산업 발전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서비스를 사업화하는 산업 다. 가목 및 나목의 산업에 필요한 연구·개발 등을 하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 2. “반도체산업혁신특구”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 반도체의 기술개발 및 설계·제조·공급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3. “반도체산업 기반시설”이란 반도체 특구에 전력·용수를 공급하고 반도체 특구에서 배출하는 폐수·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의 생태계 강화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 등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및 규제 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안 제2조(정의)는 반도체산업, 반도체클러스터(반도체산업혁신특구), 반도체산업 공급망안정품목(이언주의원안), 반도체산업 기반시설(정진욱의원안)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정의규정은 해당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규정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 다른 용어들을 기술하는 데 있어 토대가 되는 용어 및 일반적인 쓰임새와 다르게 사용되는 용어 등의 뜻을 명확히 하여 법률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 및 분쟁을 방지하고, 자주 사용되는 용어를 미리 하나의 조문에서 설명하여 돕으로써 법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등의 기능을 함.

이언주의원안의 경우, 법률 내용 중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안 제15조)과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안 제16조) 등에 관해 규정함에 따라 “공급망안정품목”을 정의할 필요가 있고,

정진욱의원안은 안 제12조제2항에서 반도체산업혁신특구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각 호의 기반시설을 지원하도록 규정하면서 이와 연관 지어 “반도체산업 기반시설”을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정의 규정과 제정안의 내용 간에 상충 없이 조화되도록 조문을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반도체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규정하였고, 정진욱의원안의 경우 이에 더하여 재원조달 계획 및 재원확보 책무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음.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법률간 적용의 우선 순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규제완화 등과 관련한 사항은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등에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타당해 보임.

다. 기본계획·실행(시행)계획의 수립 및 통계 작성

(이언주·정진욱의원안 제5·6조, 정진욱의원안 제7조)

이언주의원안	정진욱의원안
제5조(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제5조(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반도체산업 분야의 발전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언주의원안	정진욱의원안
기본방향 2. 반도체산업의 발전과 원활한 전력 수급을 위한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3. 반도체산업의 동향 및 발전전망에 관한 사항 4.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5. 반도체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6.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원활한 국산화 및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관한 사항 7.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및 반도체산업의 시설투자 또는 연구개발 투자의 규제완화 등에 관한 사항 8. 반도체산업의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보호 등에 관한 사항 9. 반도체의 원활한 제조 및 공급 등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 관한 사항 10. 반도체산업의 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11.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7조에 따른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기본방향 2. 반도체산업의 동향 및 발전전망에 관한 사항 3.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5.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원활한 국산화 및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관한 사항 6.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및 반도체산업의 시설투자 또는 연구개발 투자의 규제완화 등에 관한 사항 7. 반도체산업의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보호 등에 관한 사항 8. 반도체의 원활한 제조 및 공급 등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 관한 사항 9. 반도체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확대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0.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립하되, 제8조에 따른 국가반도체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이언주의원안	정진욱의원안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같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실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실행계획 이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실행계획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실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제8조에 따른 국가반도체경쟁력강화위원회에 전년도 실행계획 이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실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반도체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① 정부는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반도체산업 분야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언주의원안	정진욱의원안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5조, 제6조는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 등을 위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실행계획” 또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시행계획”(이하 “실행(시행)계획”)의 수립 주체, 절차,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음.

두 제정안 모두 기본계획은 정부가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립하고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언주의원안의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진욱의원안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실행(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며, 이언주의원안의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회에, 정진욱의원안은 국가반도체경쟁력강화위원회에 전년도 시행계획 이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본계획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공통적으로 정책의 기본방향, 동향 및 발전전망, 제도 수립 및 정비, 혁신생태계 조성, 국산화 및 공급망 확보, 전문인력 양성·보호, 인프라 조성, 연구개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언주의원안의 경우 전력수급을 위한 국가전력망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있음.

또한, 정진욱의원안 제7조는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반도체산업 분야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을 마련하는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통계의 작성 등 유사한 내용의 행정상 의무조항이 다수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내용 중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관련된 사항은 이 법에 따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상의 중복 및 불필요한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 주체와 관련하여,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은 범부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과업이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립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특허청은 반도체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경쟁국이 우리 기술을 모방·침해하지 못하도록 특허·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확보 및 보호를 기본계획 및 실행(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라.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설치

(이언주의원안 제7조, 정진욱의원안 제8조)

이언주의원안	정진욱의원안
제7조(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①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과 관련된 정부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이행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반도체산업의 발전과 원활한 전력수급을 위한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3.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8조(국가반도체경쟁력강화위원회) ①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반도체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실적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반도체산업 관련 중장기 전망 분석 및 국가비전 수립에 관한 사항 3.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이언주의원안	정진욱의원안
관계 부처 규제 일원화 및 인·허가 의제 확대 등 제도에 관한 사항 4. 반도체의 설계, 제조 및 공급 등을 위한 인프라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및 세제지원에 관한 사항 6. 반도체클러스터의 조성·지정·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반도체산업 특례에 관한 사항 8. 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설치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인·허가 의제 사항 9.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에 관한 기본방향 10.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관련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11.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4. 제10조 및 제11조 따른 반도체산업혁신특구의 조성·지정·해제·지원 및 특구 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제12조에 따른 반도체산업 기반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반도체산업 육성 관련 특례에 관한 사항 7. 반도체 분야 발전 시책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간 업무 조정 및 조율에 관한 사항 8. 반도체산업단지혁신특구 산업기반시설 설치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인·허가 의제 사항 9. 반도체기술 관련 전문인력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대통령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계·학계·연

이언주의원안	정진욱의원안
사람으로서 기업계·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정책과 관련한 특정한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연구기관·사업자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된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 또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에 관련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이언주의원안) 또는 “국가반도체경쟁력강화위원회”(정진욱의원안)(이하 “반도체경쟁력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임.

이언주의원안의 경우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반면, 정진욱의원안은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2명 포함하도록 하고 감사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하여,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 전략산업 등의 육성 및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므로 이와 중복되지 않고 차별화하여 효과적인 컨트롤타워로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방안이 타당해보임.

반도체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반도체경쟁력위원회와 현행 국무총리 소속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가 기능상 유사·중복이 발생할 우려된다는 입장임..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반도체경쟁력위원회 부위원장 또는 간사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마. 지원정책, 인허가 및 예타 등 특례

(이언주의원안 제8조·제13~17조, 정진욱의원안 제9조·제13~16조·제20조)

이언주의원안	정진욱의원안
제8조(반도체산업을 위한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 ①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발전과 원활한 전력 수급을 위하여 반도체산업에 대한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에 필요한 설비가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반도체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하여 반도체 제조시설 신설, 확대 또는 이전하는 경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	제9조(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①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생태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실증, 안전관리 및 관련 기반시설의 구축 2. 연구개발 또는 연구장비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및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3. 이공계 석사 및 박사 연구인력 고용보조금의 우선 지원 4. 해외 인력의 유치 지원 5.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 분쟁의 대

이언주의원안	정진욱의원안
제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용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이 반도체산업 연구개발 및 사업화,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장비(중고품을 포함한다)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의 일부를 용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용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자금을 용자받은 기업이 해당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용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반도체기술의 연구·개발·사업화 또는 반도체기술 관련 품목의 생산 및 수급에 미치는 영향 2. 교역규모 및 국제 분업구조 3. 해외 특정 지역 또는 국가로부터의 수입 비중 4. 중·장기 수급 여건 전망 5. 국가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 6.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응 지원 6. 해외특허출원 등 해외진출 전략에 관한 지도 및 자문 7.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발전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반도체기술 확보 및 제조 능력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제품 생산 및 정밀 검사 2. 첨단제품 생산을 위한 제조 장비 도입 3. 국내에서 개발되지 않은 기술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시설 설비 4.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발전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3조(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① 반도체산업혁신특구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협의·승인·인가·허가 등(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이 지연되어 특구의 조성·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인·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되는 사항에 관한 관계 행정

이언주의원안	정진욱의원안
③ 제1항에 따라 선정한 공급망안정 품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반도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망안정품목의 공급망 위기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반도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 단체 및 관련 사업자 등에게 공급망안정품목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망 위기 징후를 포착한 경우 위기경보 발령의 필요성, 발령 단계, 발령 범위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경보를 발령하여야 한다.	기관의 장과의 협의 또는 승인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인가·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항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발사업 협의 5. 그 밖에 반도체산업혁신특구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인·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이하 “인·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인·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인·허가권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인·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허가 등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인·허가권자는 인·허가 등의 처리 계획을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인·허가권자가 인·허가 등의 처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회신 기간

이언주의원안	정진욱의원안
제17조(반도체산업 공급망센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반도체산업 공급망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반도체산업 공급망센터(이하 “공급망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갖춘 것 ② 공급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반도체산업 공급망 정보 수집·분석 2. 반도체산업 공급망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3. 반도체 공급망 관련 국내외 정책·제도·연구개발 동향 조사 등에 대한 정책지원 4. 반도체 기업의 공급망 관련 정보 제공 및 경영 등에 관한 자문 5. 그 밖에 반도체의 공급망 안정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망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관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처리 계획을 제출한 인·허가권자는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인·허가 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허가 등의 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한 연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인·허가권자가 제3항의 처리 기간 내에 인·허가 등의 처리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회신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의 처리 기간 내에 인·허가 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에 인·허가 등의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⑥ 그 밖에 인·허가 등의 신속 처리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규제개선 신청 등) ① 반도체산업혁신특구 관리주체와 반도체산업혁신특구 내의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체 및 연구기관은 첨단 기술분야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

이언주의원안	정진욱의원안
운영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급망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급망센터를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공급망센터의 운영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반도체기술보호 종합대책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반도체산업 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외국정부로부터 반도체 관련 정보제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이하 이 조에서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관계 기관 점검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내용,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해당 규제를 개선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이언주의원안	정진욱의원안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대책 수립 및 제2항에 따른 점검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종합대책의 수립·시행과 제2항에 따른 점검회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조속히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둘 이상인 경우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 등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절차에 따라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특례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같은 법 제72조 및 제8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특례 관련 사항을 신청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와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

이언주의원안	정진욱의원안
	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관련 법령과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반도체산업혁신특구 지원 사업 2.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사업 목적, 규모, 추진 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②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국가·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반도체기술보호 종합대책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반도체산업 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외국정부로부터 반도체 관련

이언주의원안	정진욱의원안
	정보제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이하 이 조에서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관계 기관 점검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대책 수립 및 제2항에 따른 점검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종합대책의 수립·시행과 제2항에 따른 점검회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혁신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복귀기업(이하 “입주국내복귀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임대할 부지의 조성,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의료

이언주의원안	정진욱의원안
	시설·교육시설·연구시설·주택 등 기업 및 투자 유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외국인투자기업 2. 입주국내복귀기업 3. 반도체기술 및 반도체제품에 투자하는 반도체산업혁신특구 입주기업체 4. 반도체산업에 투자하는 반도체산업혁신특구 입주기업체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언주의원안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지자체에 필요한 지원 실시 근거를 규정하며(안 제8조), 반도체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안 제13조), 융자(안 제14조),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 및 반도체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안 제15·16조), 반도체산업 공급망센터 지정(안 제17조)를 규정하고 있음.

정진욱의원안은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 실증, 안전관리 및 기반시설 구축, 인력양성, 연구인력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9조), 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

례(안 제13조), 규제개선 신청(안 제14조),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안 제15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반도체산업을 위한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

이언주의원안 제8조에 따른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은 대규모의 전력을 수요로 하는 반도체산업 클러스터 또는 관련 시설 등과 관련하여 미리 전력 공급에 대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사안으로 보임.

다만,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도체산업에 대한 사항이 의무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수립 주체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사항은 반도체경쟁력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이언주의원안 제8조제2항은 국가전력망 설치 및 확충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에 필요한 설비가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력망 등 설비의 설치·확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을 지자체 지원을 통해 예방·해소함으로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나, 국가가 지자체에 직접 지원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을 하는 경우에도 지원의 대상과 내용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세제지원

이언주의원안 제1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하여 반도체 제조시설 신설, 확대 또는 이전하는 경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제지원은 구체적이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세법에서만 조세감면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프로그램적 규정 또는 훈시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규정 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는 개별법상 규정된 국세·지방세 감면 규정은 선언적 의미로 볼 수 있으며, 특례규정 신설 등 감면 여부는 조세 관계법을 통해서만 가능함에도 일반 납세자가 오해 및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용자

이언주의원안 제14조(용자)는 반도체산업 연구개발 및 사업화,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장비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의 일부를 용자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용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기업의 연구개발 등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며,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6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등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도 자금의 보조·용자 등은 가능함.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이미 용자·투자·보조·출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중이며, 성공불용자 제도는 투자금 회수에 대한 위험부담이 크므로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임.

□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 및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등

이언주의원안 제15~17조는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 및 반도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반도체산업 공급망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반도체산업의 안정성 확보와 국산화를 위한 취지로서 산업안보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에 해당하나, 현행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2(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 및 제23조의2(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제23조의3(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지정 등)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제정안에 별도로 규정 필요성을 입법정책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기획재정부는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공급망센터의 지정 등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유사·중복이 우려되므로 규정하는데 부정적인 입장임.

□ 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정진욱의원안 제9조는 반도체산업의 생태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반도체산업은 대기업 외에도 반도체 설계 및 IP기업, 디자인하우스, 파운드리, 패키징을 비롯한 OSAT(Outsourced Semiconductor Assembly and Test) 및 관련 소재, 부품, 장비 등을 다루는 다양한 중견·중소기업 생태계 형성이 중요하므로,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다만, 이러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각종 지원은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법⁶⁾, 「산업발전법」,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에서 유사·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하여 별도의 지원 근거를 규정할 필요성 등에 대해 입법정책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6)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4조(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정부는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혁신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실증, 안전관리 및 관련 기반시설의 구축
2. 연구개발 또는 연구장비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및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3. 「병역법」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우대 추천
4. 이공계 석사 및 박사 연구인력 고용보조금의 우선 지원
5. 해외 고급 인력의 유치 지원
6.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 분쟁의 대응 지원
7. 해외특허출원 등 해외진출 전략에 관한 지도 및 자문
8. 그 밖에 전략산업등의 발전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 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규제개선 의 신청,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정진욱의원안은 제13조(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제14조(규제개선 의 신청), 제15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인·허가 의제 사항 등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의무 회신 기간을 두어 정해진 기간 내에 인·허가 협의절차를 마무리하도록 하는 규정이며,

규제개선의 신청은 첨단 기술 분야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는 반도체산업혁신특구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동 규정은 모두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제29조(규제개선외의 신청 등), 제27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에 규정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국가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시각에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써 국가재정법 체계에서 일괄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 관련 불특정 사업에 대한 포괄적·항구적인 예타 우선 선정, 예타 면제는 예타 제도의 형해화 초래 및 유사사례 등으로의 법제화 파급 가능성 등을 고려 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 지원

정진욱의원안 제20조(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 지원)은 반도체산업혁신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조세감면 및 임대부지 조성, 토지 등 임대료 감면, 의료·교육시설 및 주택 등 시설의 설치 및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반도체 특구 입주기업체 및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반도체산업혁신특구 입주기업체에 대하여는 임대할 부지의 조성,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은 입주 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 국내복귀기업과 반도체산업혁신특구 입주 기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첨단 반도체 관련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첨단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동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단, 동 규정은 반도체산업혁신특구 입주기업 중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복귀기업 중 수도권 입주기업을 제외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정진욱의원안 제12조제3항⁷⁾과 유사한 취지로 보이므로 중복 또는 상충되지 않는지 검토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표2] 외국인투자기업·국내복귀기업 및 반도체특구입주기업 지원 비교

구 분	외투·유턴 기업	반도체 특구 입주기업
세제지원	조특법·지특법·관세법	-
입지지원	임대할 부지의 조성,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의료·교육·연구시설·주택 등 기업 및 투자 유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지원	임대할 부지의 조성,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기속 여부	재 량	재 량

7)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혁신특구 입주기업체(「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을 말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입주한 기업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6조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바. 반도체클러스터·반도체산업혁신특구

(이언주의원안 제9~12조, 정진욱의원안 제10~12조)

이언주의원안	정진욱의원안
제9조(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반도체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 기술개발 및 설계·제조·공급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중복하여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인프라 조성 및 운영, 생산시설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금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반도체클러스터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재정 지원 및 특례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도체클러스터 및 사업시행자의 지	제10조(반도체산업혁신특구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반도체산업혁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반도체 산업혁신특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내의 일부 지역 2. 반도체산업에 투자하려는 기업이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회발전특구로 정하는 지역 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연구개발특구로 조성된 지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반도체산업혁신특구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반도체산업혁신특구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

이언주의원안	정진욱의원안
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금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그 밖에 반도체클러스터의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반도체클러스터 육성시책) ① 정부는 반도체클러스터의 혁신적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에 관한 시책(이하 “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3. 반도체클러스터 입주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반도체클러스터의 체계적 개발 및 운영 자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입지, 세제, 재정, 행정 등에 관한 지원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반도체클러스터의 산업기반시설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반시설을 반	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반도체산업혁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범위 2. 반도체산업혁신특구 지정 필요성 및 기대 효과 3. 반도체산업혁신특구 개발 및 발전 계획 4. 반도체산업혁신특구 개발 및 발전에 소요되는 자원 규모 및 조달 방안 5. 반도체산업혁신특구 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 에너지”라 한다)의 공급 확대와 설비 확충 방안 6. 그 밖에 반도체산업혁신특구 지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도체산업혁신특구의 신청을 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도체 산업혁신특구 계획을 승인하고 반도체산업혁신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와

이언주의원안	정진욱의원안
도체클러스터 사업시행자의 운영 등 일정 및 계획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1. 전력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용수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폐수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그 밖에 반도체클러스터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중복하여 반도체산업혁신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반도체산업혁신특구를 지정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반도체산업혁신특구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한다. 이 경우 반도체산업혁신특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혁신특구가 산업단지에 지정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권자 2. 반도체산업혁신특구가 산업단지 외 지역에 지정된 경우: 해당 산업단지의 관할 시·도지사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혁신특구의 원활한 인프라 조성 및 운영, 생산시설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반도체산업혁신특구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반도체산업혁신특구의 변경 및 해제) ① 반도체산업혁신특구의 지정을 신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

이언주의원안	정진욱의원안
	는 시·도지사는 반도체산업혁신특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반도체산업혁신특구계획 및 반도체산업혁신특구지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반도체산업혁신특구의 지정 사유가 소멸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지정 해제 요청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반도체산업혁신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도체산업혁신특구의 변경 또는 해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반도체산업혁신특구 관할 시·도사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반도체산업혁신특구의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반도체산업혁신특구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혁신특구에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언주의원안	정진욱의원안
	1. 반도체산업 관련 투자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의 설치·운영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3. 반도체산업혁신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반도체산업혁신특구 입주기업체”라 한다) 또는 연구기관에 대한 부지의 조성,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 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의 반도체산업혁신특구 내 설비투자 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 9. 그 밖에 첨단 반도체기업의 창업 및 유치 촉진사업 등 반도체산업혁신특구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통

이언주의원안	정진욱의원안
	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 산업혁신특구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1. 용수공급시설 2. 전기공급시설 3.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4.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 시설 5. 공원 및 공동구 건설비 6. 그 밖에 반도체산업혁신특구에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 산업혁신특구 입주기업체(「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을 말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입주한 기업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6조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언주의원안	정진욱의원안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 산업 투자 촉진 및 반도체산업혁신특구 육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혁신특구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혁신특구에 입주하는 지식산업센터, 반도체산업혁신특구 입주기업체,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 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및 감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대상사업, 사용료·대부료 및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혁신특구로 지정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지매입의 요건 등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

이언주의원안	정진욱의원안
	체산업혁신특구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 등에 관련된 설비투자, 연구시설 등 인프라 투자 소요 비용 2. 반도체산업혁신특구 내 반도체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전략산업 등의 영위를 위한 생산시설, 설비 등의 설치·구축·취득 비용 3. 반도체산업혁신특구 내 반도체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반도체산업 등의 영위를 위한 반도체산업혁신특구 내 토지 등 취득 비용

이언주의원안은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지정 해제, 육성시책, 산업 기반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정진욱의원안은 ‘반도체산업혁신특구’의 지정, 변경 및 해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반도체클러스터(반도체산업혁신특구)는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투자, 기술개발 및 설계, 제조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과 특례를 제공하는 단지로서,

이언주의원안의 경우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원활한 인프라 조성 및 운

영·생산시설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금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로 하여금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전력·용수 공급 및 폐수 처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시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일정 및 계획을 고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진욱의원안은 반도체산업혁신특구로 지정을 위하여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기회발전특구, 연구개발특구, 반도체산업에 투자하려는 기업이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등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을 통해 지정하도록 하고, 특구 신청 시 다른 계획과 함께 신재생에너지의 공급확대와 설비확충방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특구에 대한 지원으로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의 설치·운영,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 대한 부지 조성, 의료·교육시설·주택 등의 설치, 설비투자,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 산업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 외국인 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지원 등 현행 관계 법령에 있는 다양한 지원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세제 지원, 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등의 감면 등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용수공급시설, 전기공급시설,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공원 및 공동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산업기반시설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설치하거나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반도체산업 등에 관련된 설비투자, 연구시설 등 인프라 투자 소요비용, 생산시설·설비 등의 설치·구축·취득 비용, 특구 내 토지취득 비용 등의 직접지원 근거도 규정하고 있음.

먼저, 반도체클러스터, 반도체산업혁신특구 등 명칭은 지정·운영의 목적과 취지에 가장 적합한 용어를 선택할 필요가 있고, 지정 절차와 관련해서는 국가와 지자체 등 관련 이해당사자가 사전에 이를 인지하고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지정요건과 관련해서는 추진 주체가 구체적인 육성 계획과 추진 의지, 재원조달 방안 등을 갖추고 있고, 전력·용수·인력 등 반도체산업의 필수적인 요소를 확보할 수 있을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내용을 반영할지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전제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반도체 클러스터 또는 반도체산업혁신특구에 대한 지원 중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및 비용의 직접 지원 등은 반도체산업 육성이라

는 제정안의 목적과 함께 다른 정책수단의 선택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근거 마련 시 의사결정 주체와
대상, 요건,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24. 6월 현재 미국·일본·EU 등은 자국 내에 투자하는
자국 또는 외국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미국은 750
억 달러의 대출, 25%의 투자세액공제와 함께 39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설비투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은 5G 촉진법 등 관련법을 개정
하여 2조엔 이상의 설비투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 등으로 알려져 있음.

[표 3] 세계 주요국 및 우리나라의 반도체 투자지원(인센티브) 현황

구분		미국	대만	EU	일본	우리나라
생산시설 보조금		\$390억 (약 53조원)	-	€430억 (약 64조원)	¥2조 (약 17조원)	-
세액 공제	시설	25%	5%	-	-	15~25%
	R&D	-	25%	-	6~12%	30~50%
기간		~'26년	~'29년	~'30년	-	~'24년

* 출처 : 대한상의('24.6월)

또한, 한국경제인연합회가 '24. 10월 발표한 자료⁸⁾에 따르면, 미국·
중국·일본은 경제안보 차원에서 반도체 지원을 강화 중으로, 미국의
경우 아시아국가에 의존하던 반도체 생산을 자국에서 해결하기 위해

8) 한국경제인협회, 「주요국 첨단산업 지원정책 비교 및 시사점」('24. 10. 7.)

인텔에 85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중국은 반도체 자급율을 7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반도체 기업인 SMIC에 2.7억 달러의 보조금 지급을 시작하였고 정부가 대주주로서 정부주도의 투자 및 연구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음. 또한, 일본은 반도체산업 재부흥을 목적으로 연합 반도체 기업인 라피더스 설립에 누적 63억 달러가 넘는 보조금을 지급했고, 추가 지원방안도 고려 중으로 알려짐.

대한상회의에 따르면, 경쟁국들은 생산시설 구축에 대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생산시설 자본투자의 30% 가량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약 10%의 원가절감 효과가 발생⁹⁾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직접 비용지원이 없는 우리나라 반도체기업은 원가경쟁력에서 열세인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임.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직접 지원은 인공지능, 미래자동차, 로봇 등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기술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국가 간 패권 경쟁이 이루어지는 현시점에 우리나라가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방편으로서, 다른 지원 정책과 함께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정책 옵션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9)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및 대한상공회의소, 「반도체 공급역량 및 원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 과제 보고서」(2024.6.)

기업 입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기술개발과 자본투자 경쟁에서 현금의 확보가 기업의 존립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원하는 경우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다만, 1기의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Fab)을 구축하는데 약 20조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직접 보조금 지원에 따른 재정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대기업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예상되는 측면이 있는바,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의 지원에 대해서는 기업투자 촉진 측면과 함께 산업기반시설 지원 및 연구개발 지원 등 다른 지원 정책과의 조화, 반도체 산업과 연관된 전후방 산업 및 국가경쟁력 전반에 미치는 거시적인 경제 효과, 재정 및 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보조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 지급 목적을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 지원 외에 시제품 생산 및 정밀검사, 기술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시설 설비, 인력확보, 토지매입 등으로 폭넓게 규정할 것인지 여부, 또한 보조금의 지급 대상을 반도체특구등 내 입주기업, 사업시행자 등

으로 한정할 것인지 여부, 절차적으로 반도체경쟁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기획재정부는 전력, 용수, 폐수 등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은 원인가 및 비용부담 원칙에 입각하여 전력 공급과 관련하여 특정 기업이나 기관이 독점하는 송·변전 설비 등의 경우 자체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있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기준, 지원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세제지원·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한국·대만은 제조기반이 있어 세제지원 중심 지원이 적합한 반면, 미국·일본 등은 신규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각국 상황에 맞게 정책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24. 6.)을 마련하여 지원 중으로 직접 보조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반도체클러스터(반도체산업혁신특구)의 지정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아니라 정부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환경부는 반도체클러스터(반도체산업혁신특구)의 산업기반시설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반도체 산업에 대한 공업용수 공급 등 지원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비용지원을 의무화 하기보다는 완화된 지원 근거(재량)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사. 반도체기술보호 종합대책의 수립

(이언주의원안 제18조, 정진욱의원안 제16조)

이언주의원안	정진욱의원안
제18조(반도체기술보호 종합대책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반도체산업 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외국정부로부터 반도체 관련 정보제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이하 이 조에서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관계 기관 점검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대책 수립 및 제2항에 따른 점검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종합대책의 수립·시행과 제2항에 따른 점검회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반도체기술보호 종합대책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반도체산업 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외국정부로부터 반도체 관련 정보제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이하 이 조에서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관계 기관 점검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대책 수립 및 제2항에 따른 점검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종합대책의 수립·시행과 제2항에 따른 점검회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두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반도체산업 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 정부로부터 반도체 관련 정보제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매년 추진상황을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은 반도체산업 기술 보호를 위하여 「산업기술보호법」 제5조에 따른 기술 유출 방지·보호에 관한 종합계획과 별개로 외국정부로부터 반도체 관련 정보제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 기술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반도체산업 기술의 유출이 외국의 정보제출 요구에 의한 것 외에도 협력업체 등을 통한 기술탈취, 외국기업의 국내 인력 채용, 기업 인수합병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외국의 정보제출 요구에 의한 것만을 대상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다소 범위가 협소한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기술 유출 방지·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의무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전략산업 등 육성·보호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비롯한 기술 보호 규정체계가 있으며, 외국 정부의 반도체 관련 정보 제출 요구는 자료 요구의 목적, 업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동 규정 반영에 부정적인 입장임.

아. 반도체산업특별회계 설치·운영

(이언주의원안 제19조, 박수영의원안 제17조)

이언주의원안	정진욱의원안
제19조(반도체산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① 정부는 반도체 기술혁신 및 지속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도체산업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반도체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반도체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회계 보유자산의 매각수입 또는 운용수입 6. 회계 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7. 반도체산업특별회계 자금의 융자 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8. 차입금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수입금 ③ 반도체산업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1. 반도체산업을 위한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	제17조(반도체산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① 정부는 반도체 기술혁신 및 지속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도체산업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반도체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반도체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회계 보유자산의 매각수입 또는 운용수입 6. 회계 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7. 반도체산업특별회계 자금의 융자 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8. 차입금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수입금 ③ 반도체산업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1. 반도체산업을 위한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

이언주의원안	정진욱의원안
2. 반도체클러스터의 생산시설 구축 등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3. 반도체클러스터의 산업기반시설 설치 4.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시책 실행을 위한 사업 5. 반도체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6. 반도체산업 인력의 양성 및 확보를 위한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치·운영 7. 반도체 혁신성장 전략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8. 반도체산업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9.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10.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11.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반도체클러스터의 생산시설 구축 등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3. 반도체클러스터의 산업기반시설 설치 4.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시책 실행을 위한 사업 5. 반도체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6. 반도체산업 인력의 양성 및 확보를 위한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치·운영 7. 반도체 혁신성장 전략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8. 반도체산업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9.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10.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11.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두 개정안은 반도체 기술혁신 및 지속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도록 하고,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또는 다른 회계·기금로부터의 전입금·예수금 등으로 하며, 세출 용도는 국가전력망 설치 및 확충 지원, 반도체클러스터의 생산시설 구축 등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산업기반시설 설치, 육성시책 실행을 위한 사업, 세제지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반도체산업을 다각도로 지원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 특별회계의 설치 필요성이 존재하는 반면, 세입측면에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외에 특정한 수입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일반회계를 통한 지원과 사실상 큰 차이가 없는 측면이 있음.

기획재정부는 반도체와 관련한 인력양성, 인프라 지원,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등 사업이 일반회계 및 여러 회계·기금을 통해 이미 지원되고 있고, 대부분의 재원을 정부출연금 등에 의존하고 있어 재원 확보가 불확실한 등 「국가재정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및 특별회계 신설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입장임.

자. 전문인력양성 지원 등

(이언주의원안 제20조, 정진욱의원안 제18·19조)

이언주의원안	정진욱의원안
제20조(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반도체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을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실시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제18조(반도체산업 전문인력양성 지원 등)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산업계·대학·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도체기술과 관련된 대학의 반도체산업혁신특구 내 설립 및 반도체기술과 관련된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의 반도체 특구로 이전 2. 산업체 수요와 연계된 계약학과 등 교육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3. 제2호에 따른 교육기관 외의 전문인력양성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사

이언주의원안	정진욱의원안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업 4.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 및 전문교원 확충사업 5.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유지 및 안정에 관한 사업 6. 퇴직근로자 등 반도체 숙련 인력이 소유한 기능·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술계승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양성사업 제19조(반도체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 ① 정부는 반도체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도체산업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특성화대학등”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 대학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3.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5.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6.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이언주의원안	정진욱의원안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7. 제18조제1호에 따라 설립된 대학 및 이전된 대학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대학등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수도권 이외의 특성화대학등은 적합한 교육환경(시설 및 교원 등)이 확충되면, 해당 과정 입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기준,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언주의원안은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정진욱의원안은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전문인력양성,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 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교육공무원 등에 관한 휴직 등 특례,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 및 특례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20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첨단산업 인재혁신특별법」(2024년 1월 제정)은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

재를 양성하고 산업계 수요에 맞추어 우수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산업계 인재육성과 관련한 지원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 법령을 통해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인재육성을 위한 사업 및 제도의 운영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 법에서 별도로 제정할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차. 부칙

이언주의원안	정진욱의원안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도체클러스터의 산업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 및 제12조에 따른 지원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이전에 설치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생산시설, 산업기반시설 등 인프라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언주의원안은 산업기반시설 지원과 관련한 안 제9조제2항¹⁰⁾ 및 제12조(반도체클러스터의 산업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지원은 반도체클러

10) 이언주의원안

제9조(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인프라 조성 및 운영, 생산시설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금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스터 지정 이전에 설치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생산시설, 산업기반시설 등 인프라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규정하는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음.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의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의해 예산이 기 지원된 바 있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사업 등이 존재하므로, 지원 적용대상을 제정안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이전에 설치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시설로 할지, 향후 착공하는 시설로 할지 등 지원 대상의 법적·시간적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정진욱의원안은 시행일부터 이 법은 10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지니도록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광범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동 제정안의 시행 시 정책효과 등을 검토하여 향후 법률의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고려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60

참고 1

반도체 산업 규모 및 우리나라 시장점유율

(출처 : OMDIA)

□ 글로벌 산업 규모

(단위: 억불)

구 분	'17	'18	'19	'20	'21	'22	'23
반도체 전체	4,315	4,846	4,286	4,756	5,944	5,977	5,448
메모리반도체	1,319	1,646	1,125	1,281	1,685	1,443	946
DRAM	735	989	622	663	941	793	512
NAND	540	610	460	572	685	594	387
시스템반도체	2,309	2,469	2,417	2,707	3,359	3,616	3,614
광개별소자	686	731	743	767	899	917	888

□ 우리나라 반도체 품목별 시장점유율

(단위: 억불)

구 분	지 역	'17	'18	'19	'20	'21	'22	'23
반도체 Total	세 계	4,315	4,846	4,286	4,756	5,944	5,977	5,448
	한 국	923	1,146	790	871	1,166	1,054	717
	(%)	21.4%	23.7%	18.4%	18.3%	19.6%	17.6%	13.2%
메모리반도체	세 계	1,319	1,646	1,125	1,281	1,685	1,443	946
	한 국	801	1,016	657	730	995	872	577
	(%)	60.7%	61.7%	58.4%	56.9%	59.1%	60.4%	61.0%
	DRAM	735	989	622	663	941	793	512
	한 국	531	716	445	472	671	559	376
	(%)	72.3%	72.4%	71.6%	71.1%	71.3%	70.6%	73.5%
NAND	세 계	540	610	460	572	685	594	387
	한 국	269	299	211	257	324	313	201
	(%)	49.9%	49.0%	45.9%	45.0%	47.2%	52.6%	52.0%
시스템반도체	세 계	2,309	2,469	2,417	2,707	3,359	3,616	3,614
	한 국	69	76	78	78	100	115	84
	(%)	3.0%	3.1%	3.2%	2.9%	3.0%	3.2%	2.3%
광개별소자	세 계	686	731	743	767	899	917	888
	한 국	53	55	55	63	71	67	56
	(%)	7.7%	7.5%	7.4%	8.2%	7.9%	7.3%	6.3%

참고 2

주요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 현황 (2024. 6.)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① (미국) 「반도체 과학법」 제정 ('22.8월)을 통해 제조, 연구개발, 인력양성을 위한 527억불(약 73조원) 규모 보조금·대출·보증 재원 마련

* 美 반도체 보조금 지원 사례 : BAE시스템스(英) 3,500만불('23.12), 마이크로칩(美) 1.6억불('24.1), 글로벌파운드리스(美) 15억불('24.2), 인텔(美) 200억불('24.3)

○ 「국세법(IRC)」을 개정 ('22.8월)하여 반도체 장비·제조시설 투자에 대해 25% 세액공제 혜택 제공

② (일본) '반도체 산업기반 긴급강화 패키지'('21.11)를 통해 1.7조엔* (약 15조원) 규모의 제조시설 보조금 재원 조성

* ('21) 6,170억엔, ('22) 4,500억엔, ('23) 6,322억엔

* 日 반도체 보조금 지원 사례 : TSMC 공장에 4,760억엔 지급(약 4.4조원, '22), 마이크론(美)에 2,135억엔(약 1.9조원, '23.10) 지급 결정 등

○ 반도체 등 5대 전략 분야*를 대상으로 생산량에 따라 법인세 최대 20% 감면 발표('23.12)

* 반도체, 전기차, 그린철강, 그린케미컬, 지속가능한 항공연료

③ (대만) 「산업혁신조례」 개정('23.1) 등을 통해 R&D 및 첨단 공정용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과 입지·인프라(전력·용수 등) 지원

○ R&D 투자액의 25%, 첨단 공정용 설비투자액의 5% 세액공제 적용(법인세의 30% 한도, '24.7~'29.12)

④ (중국) 역대 최대 3,440억 위안(약 65조원) 규모 반도체 3차 빅펀드 조성 발표('24.5)

* 과거 사례 : 1차 펀드('14, 1,390억 위안), 2차 펀드('19, 2,040억 위안) 조성

○ 반도체 분야 첨단기술 보유 기업에 최대 10년까지 법인세 면제 및 집적회로 생산설비 부품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 등 세제 혜택 제공

<주요국 반도체산업 지원 근거법>

구분	지원 근거법	주요 내용
미국	반도체과학법 (CHIPS and Science Act)	▪ 보조금(390억달러) 등 재정지원 527억달러, 세액공제 25% * 보조금 : 세부 지원기준 및 절차 (NOFO), 가드레일 규정 * 세액공제 : 「반도체과학법」에서 국세법 section 48D 추가 규정 ▪ 첨단반도체 R&D 지원 (110억달러)
EU	EU 반도체법 (EU Chips Act)	▪ '30년까지 민관 반도체 투자 430억유로 이상 자금 조성 ▪ 「반도체법」 요건 충족*시 「경쟁법」상 국가보조금 금지 예외 → 회원국이 보조금을 책정하면 EU 집행위가 심사·승인 * EU 내 최초인 제조시설, EU 반도체 공급망 공정 기여 등 ▪ 기존 EU 예산을 전용하여 반도체 기술개발 등에 활용
일본	5G 촉진법 (정보통신기술법)	▪ 반도체 중소기업 채무보증, 반도체 관련 주식회사 신주 인수 ▪ 반도체 관련 기구·비품·건물 부속 설비 및 구축물에 대한 과세특례
	NEDO법 (신에너지·기술 종합개발기구법)	▪ 반도체 제조설비 투자 보조금 * 경제안보기금 + 첨단반도체기금 + 포스트5G기금 = 1.7조엔
	경제안보촉진법	▪ 반도체 공급망 강화 지원,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 지원
중국	집적회로산업 및 SW 산업의 고품질 발전 촉진을 위한 정책 배포 관련 국무원 통지	▪ 기술 수준 및 영업 기간에 따라 법인세 차등 면제 * 28nm↓ + 영업 15년↑ : 10년 면제 / 65nm↓ + 영업 15년↑ : 5년 면제 / 130nm↓ + 영업 10년↑ : 2년 면제 ▪ 동 통지와 별도로 반도체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반도체 투자기금 조성 * (1기, '14년) 1,387억 위안, (2기, '19년) 2,041억 위안, (3기, '24년) 3,440억 위안
대만	산업혁신조례 제10조제2항	▪ R&D 투자세액공제 (25%) ▪ 첨단 공정용 장비 투자세액공제 (25%)
	미래지향적인 혁신 연구개발 및 첨단 공정 장비 지출에 적용가능한 투자공제방법	▪ R&D 투자세액공제 (25%) 조건 * 당해연도 R&D 투자액 60억 대만달러 이상, 순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 6% 이상, 유효세율 15% 이상 ▪ 첨단 공정용 장비 투자세액공제 (25%) 조건 * R&D 세액공제 조건 + 당해연도 100억 대만달러 이상 장비 구입

참고 3

반도체 첨단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

□ 국비 지원 현황

-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등 추진 속도를 감안하여 '23년 용인·평택 1천억원, '24년 포항·구미 등 439억원 예산 지원

< 특화단지 기반시설 국비 지원 현황 >

구 분	예산 지원액	지원 항목
용인·평택	1,000억원	■ 용인·평택 일반산단 변전소·송전선로 (500억원) ■ 용인·평택 일반산단 용수관로 (500억원)
구 미	200억원	■ 구미대교 신축 (200억원)
포 항	154억원	■ 영일만산단 정수장 증설 및 용수관로 (154억원)
울 산	38억원	■ 하이테크밸리 변전소·송전선로 (38억원)
새만금	47억원	■ 용수·폐수 관로 (47억원)
합 계	1,439억원	

□ 국비 지원기준

-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전력·용수·폐수·도로 4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일정 비율을 지원
- 투자 규모와 지역을 기준으로 차등하여 특화단지별 지원 비율을 적용하되, 특화단지별 500억원 한도*로 지원

* 단, 기업 투자액이 他 특화단지에 비해 월등히 많은 용인·평택 특화단지는 용인 일반산단, 용인 국가산단, 평택 일반산단으로 구분하여 각 500억원씩 지원

< 특화단지 기반시설 국비 지원 비율 >

구 분	특화단지별 투자 규모			비수도권	수도권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上 구간	100조원 이상	30조원 이상	10조원 이상	30%	25%
中 구간	10~100조원	3~30조원	1~10조원	20 → 25%	15 → 20%
下 구간	10조원 미만	3조원 미만	1조원 미만	10 → 20%	5 → 15%

참고 4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 주요 내용('24. 6.)

◇ '24. 5월 발표된 「반도체 투자 인센티브 확충 방향」 구체화
→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금융·재정·세제·기반시설 지원

① 금융지원

– 투자자금 : '27년까지 산은에 현금 1조원, 현물 1조원 출자 → 17조원 규모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24.7월부터 가동

* 적용 금리 : (대기업) 최대 1.0%p 우대, (중소·중견기업) 최대 1.5%p 우대

– 소부장·팹리스 : 現 조성 중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 3천억원 ('23~'25년 출자) + 신규펀드 8천억원* ('25~'27년 출자) 추가

* 구성 : (재정) 2천억원 + (정책금융) 2천억원 + (민간매칭) 4천억원 = 8천억원

② 세제지원

– 적용기한 :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3년 연장, 대상 기술 확대*

* 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술 추가 검토('24.12월 결정 예정)

– 적용범위 : SW 구입비 등도 대상에 포함*,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인력**에 국가전략기술 공제율 적용

* 공제대상 비용 추가 : SW 구입비, 연구시설 임차·이용료, 직무발명보상금, 자문비

** 현재는 주된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R&D에 투입한 인력의 인건비만 적용

– 감가상각 : R&D용 기계장치 감가상각 기간 단축 (5년 → 3년)

③ 재정지원 : '22년~'24년 3조원 → '25년~'27년 5조원

– R&D 예타 신속화 : 첨단패키징 선도기술, AI반도체 활용 K-클라우드 기술, 미니팹 구축

- 글로벌 R&D 확대 : 글로벌 첨단 공공 웹과 국내 공공 웹 연계 (425억원, 과기부), 한 - 네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확대
- 사업화 지원 :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과기부), 웹리스 기업 첨단장비 공동이용 지원, 수요연계 온라인 플랫폼 지원
- 인력양성 : 반도체 특성화대학 (現 18개소) · 대학원 (現 6개소) 및 AI반도체 대학원 (現 3개소) 확대

④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기반시설 지원

- 도로 : 국도 45호선 이설 · 확장 예타 면제, 국비 지원
- 용수 : 국가 · 일반산단 통합 용수관로 예타 면제, 수공 비용 분담
- 전력 : LNG 발전 (3GW) 및 장거리 송전선로 구축 → 송전선로 비용은 공공 · 민간이 분담